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612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도연, 김남훈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박동훈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9. 9.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25211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C가 피고에게 한 별지 변제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7,5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5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C에게 629,258,493원 및 그 중 109,18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29.부터, 28,654,970원에 대하여는 2006. 5. 18.부터, 94,82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14.부터, 245,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25,3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8.부터, 2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8.부터, 61,6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2.부터, 41,9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10.부터 각 지급명령경정정보 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의 금원에 해당하는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6670)에 의한 채권이 있다.

나. 위 채권은 주식회사 P, G 유한회사, H 주식회사를 거쳐 2006. 12. 16.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다.

다. C는 서울 양천구 K 외 6필지 L건물 M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D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라. D는 2015. 5. 9. 이 사건 부동산을 N에게 매도하고, 그 잔금으로 55,000,000원을 받아 중개수수료 1,30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3,692,000원을 E명의로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마. E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77,000,000원의 변제를 위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502,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바. 한편, C는 2011년 경 전신 피부경화증 등의 희귀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6. 21.

사망하였고, 그 처인 E와는 2013. 8.경 이혼하였으며, 피고는 E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을 E를 통해 D로부터 지급받고, 그 중 37,502,000원을 다시 E를 통해 피고에게 변제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E가 피고에게 위 37,502,000원을 지급할 당시 C는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E는 위 돈의 처분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E가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무권리자의 급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가 이 사건 변제 당시 희귀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 주식회사가 C의 어머니인 Q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75142)에서 Q이 답변서에 “C가 2013. 9. 9.부터 지남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13. 3. 6. 자신의 자녀에게 휴대폰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이 있고, 2015. 3. 6.에도 자신의 자녀에게 ‘생일축하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C가 R병원에 입원하였던 2014년과 2015년의 기간 동안 C는 위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증세를 표현하고, 재활치료까지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변제 당시 C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위와 같이 Q이 C에 대하여 “지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C의 안 좋은 상태를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C의 부탁을 받아 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 37,50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가 의사능력 없는 C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C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김정현, 판사 박재성

별지

순번	변제 일자	금액	비고
1	2015. 6. 2.	28,000,000원	계좌 이체
2	일자 불상영	9,902,000원	수시 현금 변제

